

대전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132114 판결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이효상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주식회사 E

피고 3,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형

변론 종결 2020. 11. 24.

판결 선고 2021. 1.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789,745원 및 그중 186,858,161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3.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9. 3.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2019.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2), 나.(2)항, 다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3.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9. 3.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2개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2009. 06. 08.	2011. 06. 07.	300,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5. 08. 11.	2017. 08. 10.	153,000,000원
합	계	453,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의 이행으로서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 A은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한 보증금액을 61,2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9. 5. 31.로, 보증비율을 80%로 각 변경하였고, 위 제2신용보증약정에 대한 보증기한을 2019. 8. 9.로 변경하였다.

4) 피고 A은 F은행으로부터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억원을, 위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5) 피고 A은 2019. 4. 11.경부터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9. 10. 29. 186,858,161원(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30,692,697원 +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156,165,464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한 대지급금으로 1,925,814원을 지출하였고, 미수위약금 1,005,77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19. 10. 29.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피고 B의 재산 처분 및 담보 제공

1)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E와 G은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해왔다.

나) 피고 B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9. 3.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9.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2019. 3.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9. 근저당권자를 피고 D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10. 10. 주식회사 H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이 설정되었으나, 이는 주식회사 H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 4월 이후 현재까지 피담보채무액은 없다.

2) 피고 B와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가) 피고 B는 2019. 4. 30.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5. 3. 피고 E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는 대신, 1억원을 피고 E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원은 피고 D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 D는 위 1억원을 G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충당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피고 C, D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9. 5. 21.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피고 B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미수위약금 합계 189,789,745원과 그중 각 대위변제금 합계

186,858,16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3. 18.보다 뒤인 2019. 10. 29.(원고가 F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날)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각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하 피고 E에 대하여도 같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20624 판결 참조), 피고 B가 피고 C, D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로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고 B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A으로 하여금 거래처인 피고 E 및 G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각 거래처의 대표자인 피고 C, D에게 제공한 담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10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이 피고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2억원에 이르는데도 피고 C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원에 불과하여 위 근저당권이 피고 E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G은 피고 A으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초과입금받은 상태였으므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이후 불과 10여일 만에 피고 A과 피고 E, G과의 물품거래가 모두 중단된 점, ④ 피고 D는 피고 B와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으면서 사업상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피고 A으로 하여금 피고 E나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 B 자신의 변제자력 회복과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액배상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것인바,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5364 판결 등 참조), 다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이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더불어 수익자를 상대로 수익자가 부당하게 보유한 변제이익 상당액을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등기 자체의 말소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고 가액배상에 의한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의 액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얻은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억 4,000만원(시가)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89,789,745원, 수익자인 피고 C, B가 취득한 이익은 각 1억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이 사해행위취소 범위의 한도가 된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E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저가로 매수한 것이 아니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E의 위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9. 5. 21. 피고 C, D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2억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억 4,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 - 2억원)이고, 위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억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A, B,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오명희

별지